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133 |
|----------|------|

발의연월일 : 2017. 5. 31.

발의자 : 민홍철 · 이완영 · 조배숙
이찬열 · 최인호 · 박재호
김현권 · 김현아 · 이개호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

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다.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22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16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제14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 중 “선출하는”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

| | |
|---|---|
| <p>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p> <p>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u>선출하는</u> 경우</p> <p>2. ~ 5. (생략)</p> | <p>-----</p> <p>-----</p> <p>-----</p> <p>-----</p> <p>-----.</p> <p>1. -----</p> <p>-----선출 또는 해임하는---</p> <p>2. ~ 5. (현행과 같음)</p> |
|---|---|